

군급식기본법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6. .

제안자 : 국방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법률안 중 「군인급식기본법안」(의안번호: 2204446)은 국방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군급식법안」(의안번호: 2207940)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전체회의 상정일
군인급식기본법안	2204446	한기호의원	2024. 9. 30.	2024. 11. 26.
군급식법안	2207940	황희의원	2025. 2. 6.	소위원회 직접회부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 4. 23.)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 6. 25.)에서 이러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군급식은 장병들의 군 복무에 필수적인 영양분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군인에게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사기, 복무 태도 등 무형의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

그러나 군급식은 「학교급식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학교급식과 달리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인 「군인 급식 규정」도 규정하는 사항이 적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군인에게 양질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특히 최근까지 군급식 부실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면서 군인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군급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군 군급식위원회와 각 제대별 군급식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군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군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안전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군급식은 각 군부대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군급식위탁공급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품질 및 안전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사. 국방부장관은 군급식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하여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2조).

군급식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인을 대상으로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군급식위탁공급업자”라 함은 제10조에 따라 각 군부대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군급식운영관계관”이라 함은 식단작성, 식품수납·검사, 조리·배치 등 군급식 운영과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임무) ① 국가는 양질의 군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위생적이고 군인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군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매년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급식 대상) 군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5조(군급식위원회) 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군 군급식위원회와 각 체대별 군급식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군급식 시설 및 관리·운영

제6조(군급식시설·설비) ① 각 군부대는 군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식재료) ① 군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③ 전·평시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을 위해 국방부장관 및 각 군부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국방부 및 각 군부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포함하여 대규모 급식인원이 있는 군부대에도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영양관리) ① 군급식은 군인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위생·안전관리) ① 군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군급식의 운영방식) ① 각 군부대의 장은 군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평시가 연계된 안정적인 급식체계 유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각 군부대의 장과 그 부대의 군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군인 등(이하 “군급식운영관계관”이라 한다)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3. 「축산법」 제40조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및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② 군부대의 장과 그 소속 군급식운영관계관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생·안전관리기준
2. 그 밖에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군부대의 장과 그 소속 군급식운영관계관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군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급식 전에 소속 부대의 군인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의 종류 등 제3항에 따른 공지 및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칙

제12조(군급식 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군급식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위생 또는 군급식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군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제11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해당 군 부대의 장 또는 군급식위탁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행정처분 등의 요청) ① 국방부장관은 「식품위생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축산법」·「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 및 신고·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3조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각 해당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벌칙

제16조(벌칙) ①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열람 또는 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과태료) ① 제1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1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